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7
----------	-----

2015. 12. 1.(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1월 25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5.10.12.): 상정(심사보류)
-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5.11.25.): 재상정(수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바이오산업과장 임현동)

가. 제안이유

-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구축 일환으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및 관련시설 건립을 통해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한 산업을 촉진시키고,

-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안 제3조)
-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의 미래산업인 화장품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해 화장품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위탁 사무의 적용범위,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건립 예정인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등 관련 산업 촉진과 화장품 관련산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본문 중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및 육성의 필요성
- 글로벌코스메슈티컬 용어의 적합성

-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화장품 GMP 제조시설,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홍보관을 제2조(정의)에 명시한 이유와 관련 시설의 설치계획
- 제3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설립근거와 화장품 GMP제조시설 및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홍보관 설치를 임의가 아닌 강제로 규정한 이유
- 화장품 산업 업체에 과도한 혜택 부여
- 제4조(사업)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 제5조제1항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만 명시해도 되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별도로 명시한 이유
- 개발센터를 새로 신축을 전제로 내용 구성한 이유
- 제5조제3항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전단에는 한 번만 갱신가능하나, 후단에는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상충됨
- 제6조 수익사업에 대한 운용계획
- 제7조(사업비 지원 등) 사업비 총량 계획
-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 책정

○ 비용추계서 중

- 국비50억에 대한 확보계획
-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사업 추진을 염두해 둔 사전행위로 판단됨.

- 관리운영경비는 유사 기관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사전검토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어떤 시설에 어떤 장비가 투입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음
- 인건비, 운영경비 등에 대한 추가설명
- 센터운영비로 연간 21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와 자체수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11. 25. 임순목 의원

○ 수정이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용어변경(안 제2조제3호)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로 수정함.

- 용어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개발센터” → “연구지원센터”로 수정함.
- 위탁 및 재위탁 기간 명시(안 제5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란”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으로,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구개발 등 지원”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 및 지원”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및 홍보 지원”을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지원”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발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를 “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및 검체를 개발센터”를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u>"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란 기능성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4.·5. (생략)</p> <p>제3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①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화장품의 신소재·제품 연구개발 및 화장품의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검사·시험, 평가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② <u>도지사는 화장품 수출과 품질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에 필수적이나, 개별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화장품 GMP제조 시설 및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홍보관 등 설치에 노력한다.</u></p> <p>제4조(사업) <u>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p>제2조(정의) ----- -----.</p> <p>1.·2. (제정안과 같음)</p> <p>3. <u>"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 ----- 제3조-----</u> -----.</p> <p>4.·5.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삭제</u></p> <p>제4조(사업) <u>연구지원센터</u>----- -----.</p>

1.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등 지원
2.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및 지원
3.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지원
- 4.·5. (생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개발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제품 연구 개발, 시험·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1. ----- 연구개발
2. -----
----- 평가
3. ----- 및
홍보
- 4.·5. (제정안과 같음)
6. -----
-----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연구지원센터-----

----- 연구지원센터-----
-----.

② ----- 연구지원센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익사업) 개발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대(轉貸)-----.

1. ~ 3.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

제6조(수익사업) 연구지원센터-----

-----.

제7조(사업비 지원 등) ① 개발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개발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검사·시험의뢰) ① 개발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험등의 의뢰서 및 검체를 개발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개발센터의 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등) ① 연구지원센터-----
-----.
----- 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검사·시험의뢰) ① 연구지원센터-----

-----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 -----
-----.

② 연구지원센터 -----

-----.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연구지원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발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개발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 6. (생략)

② (생략)

② -----
----- 연구
지원센터----- . -

----- .

제10조(지도·감독) ① ----- 연구
지원센터-----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

----- .

- .

1. (제정안과 같음)
2. -----
유용(流用)-----
3. ~ 6.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품 등을 말한다.
3.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 기능성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화장품 GMP제조시설"이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란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화장품 GMP 제조시설 및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홍보관 등 화장품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삭제

② 삭제

제4조(사업)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2.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3.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4.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5. 화장품산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제품 연구 개발, 시험·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화장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2. 연구기관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삭제

제6조(수익사업) 연구지원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등) ① 연구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검사·시험의뢰) ① 연구지원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험등의 의뢰서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연구지원센터의 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流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
- 사업기간 : '14년 ~ '16년(3년)
- 규모 : 부지 8,924㎡, 연면적 4,201.066㎡(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비 : 176억원(국비 50, 도비 126)
 - 건축비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장비비 60억원, 부지매입비 16억원
- 주요시설 : 임상시험실, 평가연구실, 효능연구실, 행정지원실
- 주요기능 : 신소재·항노화 화장품 연구, 인체효능·안전성 평가 등

2. 비용발생 요인

-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부대비, 부지매입비, 장비구입비 및 그 밖의 운영경비가 발생함

3. 관련조문

- 제3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의 설치)
- 제7조(사업비 지원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센터의 건축연면적은 4,201.066㎡로서, 1㎡당 소요 예상 건축비는 「2010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자료 중 연구소 공사 사례 및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안전행정부)」 등에 준하여 산정

- 총 부지면적은 8,924m²로서, 부지매입비는 오송첨복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1m²당 156,380원)
- 센터 내 설치될 장비 등 구입비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산정
- 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유사 기관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산정

나. 비용추계 결과

- 부지매입비 : 1,60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0,000백만원(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 장비비 : 6,000백만원
- 운영비 : 2,041백만원(년간)
 - 인건비(29명) : 1,200백만원
 - 운영경비 : 606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135백만원
 - 사용수익료 : 100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센터 건립비 : 국비 5,000백만원, 도비 12,600백만원
- 센터 운영비 : 2,120백만원(년간)
 - 사업비(과제 수행) : 120백만원(도 40, 민간 80)
 - 자체수입(임상시험, 효능평가, 안전성 검사 등) : 2,000백만원

4.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5. 작 성 자 :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산업과 과장 임현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4 년)	2차년도 (‘15 년)	3차년 (‘16 년)	4차년도 (‘17 년)	5차년 (‘18 년)	계	
세 입	2,100,000	3,000,000	12,500,000	2,120,000	2,220,000	21,940,000	
센터 건립비	2,100,000	3,000,000	12,500,000			17,600,000	
국비	200,000	1,000,000	3,800,000			5,000,000	
도비	1,900,000	2,000,000	8,700,000			12,600,000	
센터 운영비				2,120,000	2,220,000	4,340,000	
자체 수입				2,000,000	2,100,000	4,100,000	
도비(과제수행)				40,000	40,000	80,000	
민간(과제수행)				80,000	80,000	160,000	
세 출	2,100,000	3,000,000	12,500,000	2,041,000	2,096,000	21,737,000	
건축공사비	500,000	3,000,000	6,500,000	-	-	10,000,000	
부지매입비	1,600,000					1,600,000	
장비구입비	-	-	6,000,000	-	-	6,000,000	
인 건 비	-	-	-	1,200,000	1,236,000	2,436,000	
운영경비	-	-	-	606,000	620,000	1,226,000	
시설장비 유지비	-	-	-	135,000	140,000	275,000	
사용료	-	-	-	100,000	100,000	200,000	
재원 조달	2,100,000	3,000,000	12,500,000	2,120,000	2,220,000	21,940,000	
의존 재원 (국비)	소 계	200,000	1,000,000	3,800,000			5,000,000
	보조금	200,000	1,000,000	3,800,000		-	5,000,000
자체 수입 (도비)	소 계	1,900,000	2,000,000	8,700,000	2,040,000	2,140,000	16,780,000
	도비	1,900,000	2,000,000	8,700,000	-	-	12,600,000
	임상 등 수입	-	-	-	2,000,000	2,100,000	4,100,000
	사업비(과제수행)				40,000	40,000	80,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특별회계	-	-	-	-	-	-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민간부문 R&D과제수행)				80,000	80,000	160,00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

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化妆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